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1 주택(부속토지, 주택분양권 포함) : 「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」 별표1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
2 오피스텔 :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, 별표2

적용대상	거래내용	상한요율
전용면적 85㎡ 이하 (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)	매매·교환	1천분의 5
	임대차 등	1천분의 4

3 토지, 상가 등 :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

거래내용	상한요율
매매·교환·임대차 등	1천분의 9

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
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(단, 한도액 초과 불가)
▶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, 제4항
-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▶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제27조의2
-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: 보증금+(월차임×100) ▶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5항
※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: 보증금+(월차임×70)
-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/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, 주택 면적이 1/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
▶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
- 분양권 거래금액: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용자포함)+프리미엄
-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

